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56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박해철 · 김남희 · 박 정
송옥주 · 이연희 · 박균택
한민수 · 전현희 · 김정호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사망 산재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산재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촉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임.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일터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안 제171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축할 수 있다”를 “위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 ----- ----- ----- ----- ----- -----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제172조(벌칙) ----- ----- -----.
1. ~ 4. (생략)	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